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4
----------	-------

발의연월일 : 2021. 9. 13.

발 의 자 : 추경호 · 성일종 · 윤창현
김용관 · 유의동 · 조명희
유경준 · 정진석 · 한무경
이종배 · 전주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가 CVC 설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다른 창업기획자(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획자”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2.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열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

-----.

-----.

1.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
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
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③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현행과 같음)

2.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
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
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
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

-----제6호까지의-----

는 행위

4. ~ 6.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④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⑤ -----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